**노사 휴업 합의서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회의일시** | 2020년 월 일 | **참석자** | **사용자측** |  |
| **회의장소** |  | **근로자측** |  |
| **협의사항** | 1. 휴업사유: *(예시)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 대비 25% 감소* 2. 휴업실시기간: | | | |
| **의결사항** | 1. *휴업실시 (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30일)* 2. *대상: 회사운영에 필수적인 사원을 제외한 전 인원 순환휴업실시* 3. *회사 운영 재개 등 사정 변화에 의해 휴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2일 전에 개인에게 통보 예정* 4. *휴업기간: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30일* 5. *휴업수당 지급 기준: 일급의 70% X 휴업일수* 6. *주휴수당 지급 기준* 7. *일주일간 소정근로일 전체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* 8. *일주일 소정근로일 부분 휴업 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경우 주휴수당 지급* | | | |
| **의결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** | 회사와 근로자 대표는 매출악화 등에 따른 인원 감축 등 상기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, 해당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직원의 현업 복귀를 보장하고 매출 증진에 대해 노력하며 휴업기간을 조기 단축하도록 노력한다. | | | |
| **기타사항** |  | | | |

사용자 대표 확인: (서명)

근로자 대표 확인: (서명)